도 시 건 설 위 원 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9일

발 의 자 : 이용진, 소형준, 고영옥, 정윤주, 임현주, 양순임, 김경이, 김육영, 권영애, 정해숙

1. 제안이유

기존 조례가 그 대상을 경비 노동자에 국한하여,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및 미화원 등 기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여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관리 노동자’ 정의에 기존 경비원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미화원 등을 추가하여 보호 대상 확대(안 제2조)

다. 조례상 ‘경비노동자’를 ‘관리 노동자’로 명칭 변경 (안 제1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나. 협조부서 : 주택정책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3. 02. 09. ~ 2023. 02.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로, “경비노동자의 인권이”를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경비노동자”란”을 ““관리 노동자”란”으로, “경비 업무”를 “관리 업무”로, “사람”을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비노동자”를 각각 “관리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노동자의”를 “관리 노동자의”로, “경비노동자에게”를 “관리 노동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 노동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경비노동자”를 각각 “관리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비노동자와”를 “관리 노동자와”로, “경비노동자의”를 “관리 노동자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 관리 업무----------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	3. ---------- ---------- ---------- ----------

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관리 노동자----------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4. ---------- 관리 노동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관리 노동자----------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관리 노동자의 ---------- 관리 노동자에게 ----------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 관리 노동자----------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

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생 략)	자 등의 책무) ① 관리 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생 략) 3.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 관리 노동자----------. 1. 관리 노동자---------- 2. (현행과 같음) 3. ------ 관리 노동자----------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 관리 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

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생 략)	--- 관리 노동자와 ---------- ------ 관리 노동자의 ---------- ----------. ②(현행과 같음)